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이상직·이용호·홍영표

서삼석 • 이원욱 • 유동수

위성곤 · 김진표 · 강선우

이해식 • 윤영찬 • 윤관석

김종민 · 김경만 · 김윤덕

이낙연 · 김병욱 · 홍성국

김승원 · 이인영 · 김수홍

한병도 · 김한정 · 정성호

오영환 • 이원택 • 박홍근

유후덕 · 김민석 의원

(2991)

제안이유

극심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택에 대한 투자와 달리,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 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전한 국민 자산 관리 수단임.

그런데 현행법은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손실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함으로써, 각 펀드 간의 손실과 이익 을 합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수 개의 펀드에 투자하여 총 손실이 총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의 불공정성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한 펀드에도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고 있는데,이로 인해 향후 과세의 불공정성 문제가 더욱 크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체계 개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이에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당소득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제17조제1항제5호 삭제, 안 제88조제1호 및 안 제94조제1항제6호신설).
- 나. 집합투자증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 6조제1항).
- 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국외 자산과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안 제102조제2항 후단 및 제1 18조제2항제3호 신설).

- 라.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6항).
- 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함(안 제105조제1항).
- 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174조의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9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을 "제외한 분(分)"으로 한다.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전하는"을 "이전(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분배·환매·상환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제1항 중 "실지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차손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의 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13호"를 "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1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94조제1항제6호의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제119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2. 국내원천 집합투자증권양도소득: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제118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제174조의2의 제목 중 "파생상품 또는 주식"을 "파생상품·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득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	②
할 때 <u>제17조제1항제5호</u> 에 따	<u>제94조제1항제6호</u>
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	
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	
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	
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	
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제17조(배당소득)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	<u><삭 제></u>
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 8. (생 략)	5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 제5호	9 <u>제4호까지</u>

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제외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

10 <u>제4호까지</u>
② (현행과 같음)
3
<u>제외한 분(分)</u>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

④ ~ ⑥ (생 략)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저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有償)으로 사실상 <u>이전하는</u>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 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 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 니한다.

가. • 나. (생 략)

2. ~ 8.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 략)

<신 설>

<u>.</u>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88조(정의)
·
1
이전(집합투자
증권의 경우 분배・환매・상
환을 포함한다)하는
완글 포함만나)하는
가.·나.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세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저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 가액에 따른다.

② • ③ (생 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 저 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7. (생 략) <u><신 설></u>

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
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세96조(양도가액) ①
실지거래
가액(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세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
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② ~ ⑥ (생 략)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전 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 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 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따라 평가한 가액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산 등) ①
<u>.</u>
1. ~ 3. (현행과 같음)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
득
2
<u>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u>
른 양도차손금액 중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
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
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
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
<u>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의 방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저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략)

<신 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지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3. (생략)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
디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 ② ~ ⑤ (생 략)
-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있다.
- ⑦・⑧ (생 략)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 은 항 <u>제3호다목 및 같은 항</u>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 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 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 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제118조(준용규정) ① (생 략)

	<u> </u>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
	의 20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3호 및 제14호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	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	신고) ①
-	<u>제3호 다목, 같은 항 제</u>
5	5호 및 제6호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	11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
-	<u>이</u>)

집합투자증권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 11. (생 략) <u><신 설></u>

12. (생략)

제174조의2(<u>파생상품 또는 주식</u> 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

②	-
	_
	_
	_
 .	
1. ~ 2. (현행과 같음)	
3. 제94조제1항제6호의 집합투	<u>=</u>
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히	}-
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
로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_
득)	_
1. ~ 11. (현행과 같음)	
	า
11의2. 국내원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제94조제1항제6호	<u>-</u>
에 따른 자산(제118조제2항이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저	1
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 Ӈ
하는 소득	_
12. (현행과 같음)	
, = , = ,	
제174조의2(<u>파생상품·주식</u> 또는	<u>-</u>
<u>집합투자증권</u> 의 거래내역 등	
제출)	_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 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
료